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2026년 3월 24일

국 무 총 리 김 민 석

국 무 위 원  
기 후 에 너 지 김 성 환  
환 경 부 장 관

● 대통령령 제36218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산업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을 같은 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하고, 협약 체결방법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848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고 있던 연구개발사업 협약의 체결방법·대상기관 및 출연금의 지급·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